

'청년 담론'
분석에 기초한
청년 활동 전망 연구

\ 연구 책임

박이대승 정치스튜디오 회원

\ 연구진

박설아 정치스튜디오 회원

이다솔 정치스튜디오 회원

정다혜 정치스튜디오 회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 청년허브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 기호 분석 : '청년'이란 무엇인가?	
01. 논의의 토대가 무너진 사회	3
02. 권력과 개념 : 왜 의미투쟁 전략이 필요한가?	6
03. '청년'의 경제적 의미 : 특수하지 않은 통계적 인구 집단	10
04. '청년'의 정치 문화적 기원	13
05. 청년의 법적 의미 : 청년은 사회적 약자인가?	18
06. '청년'을 둘러싼 의미투쟁 : 청년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22
07. 두 수준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31
2. 시민성과 권리	
01. 사회적 논의의 이상적 절차	36
02. 세대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 권리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38
03. 권리란 무엇인가?	40
04.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 시민의 평등한 권리	44
05. 사회권의 재인식: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주장으로	47
06. 시민권과 사회적 소수자	50
07. 청년의 지위 : 청년 시민	52
08. 두 가지 전략의 충돌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54
3. 청년정책의 재구성	
01. 청년정책은 이차 범주	59
02. 일차 범주와 이차 범주 사이의 충돌	62
03. 충돌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 : '청년'을 넘어선 청년정책	64

1

‘청년’ 기호 분석 : ‘청년’이란 무엇인가?

01. 논의의 토대가 무너진 사회
02. 권력과 개념 : 왜 의미투쟁 전략이 필요한가?
03. ‘청년’의 경제적 의미 : 특수하지 않은 통계적 인구 집단
04. ‘청년’의 정치 문화적 기원
05. 청년의 법적 의미 : 청년은 사회적 약자인가?
06. ‘청년’을 둘러싼 의미투쟁 : 청년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07. 두 수준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새 '청년'은 쉽게 쓰기 곤란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청년이란 누구인가?'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주저함 없이 청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십중팔구 청년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청년은 사회 구성원 일부를 지칭하는 일종의 세대 범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아니 그전에, 청년을 정확한 연령대로 정의할 수는 있는 걸까요? 청년을 연령대로 정의할 수 있다면, 왜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으로 대우해야 하는 걸까요? 청년이 연령으로 정의될 수 없다면, 도대체 청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청년담론'을 둘러싼 혼란 대부분은 청년이라는 개념이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를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사물의 범주를 나누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사회 집단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회가 자신의 구성 부분을 나누고 규정하는 방식에 그 사회의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집단을 나누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고 싶다면 청년을 분석하면 됩니다. 세대 범주는 이천 년대 중반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매우 특수한 개념적 생산물입니다.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우회해야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단일하지 않으며, 다층적으로 구조화된 의미들이 경제적, 법적, 정치적, 문화적 수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배열되기 때문입니다.

01. 논의의 토대가 무너진 사회

청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특징 하나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통 토대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논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극단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한국 사회에는 항상 '메인 이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2015년 상반기는 '자원개발 비리 수사 -> 성완종 리스트 -> 총리 임명 -> 메르스'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슈의 흐름은 단순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매번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립하는 두 극단은 현 정부에 대한 찬·반 진영과 자주 일치합니다. 흔히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이념 대립', '소통의 부재' 따위에서 찾지만, 이것은 매우 표면적인 접근입니다. 애초에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집단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며, 반대하는 집단을 묶어주는 공통 이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야당'은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념 과잉'은 커녕, 이 사회에 '이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수 천 개의 서로 다른 '한국어들이' 격돌하다가, 메인 이슈 하나가 터지면 찬성, 반대라는 두 줄로 정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는 합의에 이를 수도 또 다른 갈등으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를 하든 싸우든 하려면 같은 무대 위에 서야 합니다. 같은 무대 즉,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통 토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논의는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이 제각기 다른 언어로 고통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회적 논의의 토대라는 것은 공통 언어와 합리성,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는 국가 장치와 제도, 시민 사이의 평등한 관계,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정치 이념, 보편성을 획득한 사회적 가치, 정당정치와 시민사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수준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 사회적 논의에 필수적인 '기초 개념'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청년이라는 범주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개념의 결여'라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례1. 자유는 현대 정치 체제 대부분의 기초 이념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자유 시장주의, 공동체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유 개념을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들 사이의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이한 입장 사이의 대화와 논쟁이 자유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자유에 관한 일반적 합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성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론적, 정치적 집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란 사실상 내용 없는 껍데기 같은 말일 뿐입니다.

사례2.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사건에는 "교육이 문제다"라는 평가가 붙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과 대립하는 것은 '입시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이 과연 인성과 입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그전에 '교육'이 이해되는 방식 자체도 문제입니다.

사례3. 권리와 의무는 실생활에 필수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권리는 일종의 '특혜'나 '특권'으로 이해됩니다. '특혜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권리와 의무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보장된 유가족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들의 요구를 권리 주장이 아니라 더 많은 특혜를 누리려는 '욕심'으로 취급합니다. 다른 기초 개념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합의된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자유, 권리, 의무, 인류공영, 안전, 민주공화국, 주권, 국민, 정당, 민족, 민족문화, 행복을 추구할 권리,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 ...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법적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 중 사회

적 논의에 필요한 수준으로 널리 합의된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각각 정도는 다르겠지만, 앞서 말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논의 토대가 이토록 허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빈약한 지적 토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기초로 삼아야 할 개념을 창조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식인과 지식 생산 시스템의 작업입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 생산 시스템은 너무 부실해서 제 기능을 수행한 적이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대학 중심 체계를 비판하며 대안적 지식 생산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모두 '인문학'이라는 정체 모를 이름을 달고 문화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토대의 빈약함을 사회적 논의 토대를 약화한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꾸로 사회적 논의 토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지식 생산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나?"를 묻습니다. 매우 특정한 영역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문제-원인 관계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을지 모르나, 사회 전체의 범위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복잡한 요소들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얽히고설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회적 논의 토대가 허약하다'는 사실은 응축된 근현대사 자체입니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02. 권력과 개념 : 왜 의미투쟁 전략이 필요한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통 무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권력의 작동 영역을 극대화합니다. 사회의 지적 토대를 이루는 이론과 지식, 개념의 성립과정에는 당연히 정치권력이 작동하지만, 일관성을 갖춘 완결된 지적 체계에는 현실 정치의 논리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법원, 국회, 행정부의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단지 조직 체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 지식 체계, 정당 정치, 통치 기술은 서로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해 유지됩니다. 정당 정치가 헤게모니적 실천에 의해 정의되고 행정부가 통치 기술의 효과적 실행에 의존한다면, 법률은 추상 원칙 사이의 형식 논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법체계는 사회적 이해 없이 법전 속에만 존재하고 통치 기술의 지적 토대 역시 허약합니다. 정당 정치의 기능과 작동 방식도 유권자와 합의된 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력이 국가 장치와 제도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 권력 집단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판사 채용에 개입하거나 4대강 사업 평가 기준을 제멋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검찰을 동원해 정당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개념과 권력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개념을 다루는 토대가 튼튼하지 않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개념 생산과 재생산에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 다시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례1.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주류 정치권력은 자유 민주주의를 '북한 반대' 혹은 '국가 안보'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 역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개념의 정의에 관해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었다면, 정치권력이 제 맘대로 자유 민주주의의 의미를 조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례2. 군대 내 성폭력은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특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며, 사회는 피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언론이 군대 내 성폭력을 '성 군기 위반'이라 부릅니다. 이 말에 의해 피해자의 존재는 사라지고, 가해자의 잘못은 '군기 위반'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권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성폭력이란 말도 그런 권력과 오랜 시간 싸운 후에야 사회적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존재했다면, '성 군기 위반' 따위의 해괴한 말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례3. 요즘 거의 모든 종류의 부당한 권력관계를 '갑을 관계'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계, 위계관계에 의한 성차별과 성폭력, 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모욕, 노동과 자본 혹은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 사이의 갈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 마저 '갑을'이라 이름 붙인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갑을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경우에 따라 작동하는 권력과 부당함의 종류가 모두 다르고, 당연히 해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갑을 관계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순간,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단지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노동착취' 혹은 '인턴제도의 악용'이라 불러야 할 문제는 '열정페이'라는 이름과 함께 가치 중립적 사회 현상으로 인식됩니다.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사건은 '땅콩 회항'으로 불리면서, 매우 예외적 해프닝 같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부당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그에 맞는 정확한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런 모호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 역시 권력작동의 결과입니다. 권력을 가진 진영의 개입에 의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이 최대한 제거된 중립적인 개념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례4. 삼포세대. 이 말에는 두 종류의 권력이 개입합니다. 취업, 결혼, 출산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인생의 전형입니다. 현실의 20대 구직자에게 실업의 가장 큰 고

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성세대가 청년을 부르는 이름은 사회적 언어로 인정되지만, 청년이 기성세대를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삼포세대는 기성세대가 행사하는 '이름 붙이는 권력'의 생산물입니다. 다른 한편, 취업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남성에게 부과된 삶의 표준입니다. 여성은 결혼하고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요컨대, 청년을 삼포세대라 부르는 권력에게 청년=남성인 것입니다. 여전히 젠더가 학술 개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통 토대의 형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자.' 최근 많은 사람이 어떤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 그 해법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하며 '00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발상은 과거 역사를 지우고 완전히 다른 사회 형태를 이식하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제도나 정책조차 이런 방식으로는 온전히 도입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허약한 사회적 논의 토대는 그 자체가 역사의 응축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에 기초한 사유와 언어가 필요하고 정당 정치와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하며, 지식 생산 시스템과 관련 국가 장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은 다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전략적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논의 토대의 부재'와 '정치권력의 지배적 역할'로 요약되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시급한 과제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이용하는 일입니다. 과도하게 확장된 정치권력의 영역을 비판하되, 외부에 머물지 않고 정치 실천의 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앞서 갑을 관계, 열정 페이, 삼포세대 같은 말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주어진 사회 상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 실천의 장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그러한 기호를 의미투쟁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예

컨대, 갑을 관계는 단지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의지만 반영된 말이 아닙니다. 사회의 한쪽에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려는 집단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둘의 갈등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 되는 데, 그것이 갑을 관계라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장그래'입니다. 『미생』이 다루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계급과 노동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언어로 자리 잡기 매우 어려우므로, 장그래라는 기호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시해야 하는 사회적 현실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 기호는 노동의 현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에게 의해 창조되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의 이름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그래는 단순히 사람 이름일 뿐, 어떤 고정된 의미도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그래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으로 정의하려는 진영과, '장그래법'으로 흡수하려는 진영 사이의 의미투쟁이 벌어집니다. 열정페이, 삼포세대 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포세대는 사회의 주류 집단이 청년에게 붙인 이름이지만, 반대로 청년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년실업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기성세대가 그냥 '남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굳이 공통 경험을 상기시키는 삼포세대 같은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미투쟁 전략'입니다. 이번 장의 제목인 '청년은 누구인가?'는 이제 '청년이라는 말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로 다시 제기되어야 합니다.

03. '청년'의 경제적 의미 : 특수하지 않은 통계적 인구 집단

이제 '청년'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것의 일차 의미는 특정 연령대에 포함된 인구 집단 전체입니다. 하지만 그 연령대의 정확한 기준이 청년 개념 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정서와 관례에 따라 대략 20, 30대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10대 후반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확한 연령 구간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 필요라는 것이 매번 달라지므로 청년의 범위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우리는 '청년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리자마자 이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부분들을 나누어 파악하는 방법 즉, '분석'이 유용합니다. 여기서는 경제, 법, 정치 문화 영역을 나누어 청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은 이러한 영역들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며, 그 의미들은 영역 사이의 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구조화됩니다. 먼저 경제 영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사회적 언어의 발명은 고전적 현상입니다. 그 세대만 가지는 특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젊은 세대의 공통 경험을 문화적 특성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신세대, X세대, 디지털 세대 등등. 이러한 세대 규정과 이전 세대 중반 등장한 '88만 원 세대'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일차 의미는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20, 30대의 열악한 경제 처지입니다. '88만 원 세대'는 두 가지 의미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20, 30대 인구 집단이라는 통계적 개념. 둘째, 다음과 같은 경제 상황의 집합 - 노동시장 진입 실패, 불안정 고용, 비인간적 노동 조건,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한 주거 조건, 높은 등록금 등. 요컨대,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은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20, 30대 인구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한 단계 의미 계열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열악한 경제 상황 → 통계적 20, 30대 집단

<그림 1>

지금 청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경제 상황에서 나옵니다. '요즘 청년은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인 집단이 20, 30대라는 통계 구간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입니다.

첫째, 연령이 아니라 젠더, 지역, 학력, 고용 형태, 직업, 신체 특징 같은 범주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더라도 경제적 약자들은 매년 특정 집단에 모여있을 것입니다. 젠더로 구별하면 여성, 대학 교육을 기준으로 나누면 고졸 이하, 지역 기준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에 열악한 경제 조건이 집중됩니다. 따라서 '왜 젠더나 학력이 아니라 연령 기준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경제적 통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젠더, 지역, 부동산, 학벌에 따라 인구 집단을 나누고,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분석한 작업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평등보다 연령 간 불평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설사 연령을 집단 분류의 기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경제 조건을 바꾼다면 70, 80대 연령 구간의 경제 상황이 20, 30대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실업이나 고용 안정성이 아니라 빈곤률, 자살률 혹은 질병 발생률을 중심으로 보면,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업률을 근거로 "청년이 살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자살률 통계를 보여주며 "노인이 더 고통스럽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림 1>의 의미 계열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원한다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열악한 경제 상황 -> 70, 80대라는 통계적 집단'이라는 의

미 계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주장의 근거는 경제적 사실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셋째, 다양한 경제 상황을 하나의 계열로 만들어 20, 30대 연령 집단에 결합해야 하는 필연성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대를 완전히 삭제하고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주거 빈곤층, 저소득 계층, 대학생 등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준에 따라 인구 집단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88만원세대』의 저자들은 다양한 경제 조건을 '세대'라는 틀로 종합했지만, 그냥 연령에 상관없이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프리캐리아트'로 지칭하고, 『프리캐리아트의 등장』같은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프리캐리아트가 아니라 88만 원 세대이어야만 하는 이유 역시 경제적 수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04. '청년'의 정치 문화적 기원

위의 분석을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범주가 아니라 세대 범주인가?', '왜 다른 연령대가 아니라 20, 30대인가?', '왜 다양한 경제 조건을 굳이 세대 집단으로 종합해야 하는가?' 1장의 핵심 주장은, 이 질문들의 답이 경제 영역이 아니라 정치 문화 영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 영역에서 20, 30대에 결합된 여러 의미'와 '정치 문화 영역에서 정의된 청년' 사이의 관계가 다양하게 변형되며 상황 인식, 전략 수립, 정책 설계 등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경제 영역과 정치 문화 영역의 구별이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 실재와 정치적 기호, 경제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 영역은 현실의 경제 상황, 경제 이론, 정책, 경제적 통념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정치 문화 영역은 정치 정세, 정치 이론, 정치 문화적 전략, 정치의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치'가 아닌 '정치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분석할 정치권력이 여러 문화 장치를 통해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각 영역의 구별을 이론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 의미에 따라 정치는 '권력', 경제는 '돈'에 관련된 것이라 이해하셔도 별 무리 없습니다. 그럼 정치 문화적 수준에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첫째, '왜 다른 범주가 아니라 세대 범주인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방식은 인식과 행위의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구성합니다. 예컨대, '식당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노동자'와 '대학에 다니는 20대 초반 여성' 중, 편의점에서 일하는 고졸 20대 여성 노동자가 '우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사회의 지배적 인식은 20대 여성 두 명을 함께 묶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노동자보다 20대라는 공통성이 훨씬 강력하게 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7년 군사 독재의 종말과 98년 IMF 사태에 의해 분리된 이질적인 세대 집단 즉, 개발 독재 세대, 민주화 세대, 신자유주의 세대의

공존입니다. 세 집단 사이에 '우리'라는 인식을 위한 공통 경험이나 동질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20, 30대는 다른 세대와 분명히 구별되는 생활 양식과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세대 범주는 '적대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 간 공통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세대 집단이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젠더는 많은 사람에게 양성 간의 적대적 차이로 인식됩니다. 지역 범주 역시 지방과 도시의 대립, 지역감정 등을 상기시킵니다. 반면, 청년 시기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연령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은 '부모와 아이의 갈등'으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정서적 불편함을 주지 않은 채, 그나마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게 세대 범주라는 말입니다.

둘째, '왜 다른 연령대가 아니라 20, 30대인가?' 이 물음의 가장 직접적인 답은 정당 정치와 선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정당의 존재 근거는 정치 이념입니다. 이념과 가치의 동일성이 정당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전망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합니다. 한국 정당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정치 이념의 부재입니다. 새누리당에 남은 것은 오로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천박한 약속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심판' 혹은 '반박근혜'만 되뇌고 있습니다. 야권 세력은 민주화 운동의 경험 말고는 아무런 공통성도 갖지 못한 잡다한 분파들의 집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략이 세대 담론이었습니다. '당신은 청년이니 새누리당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표를 요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이 문제'라는 비판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세대 담론이 선거 전략을 위해 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세대 범주가 다른 사회적 범주보다 더 일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대 범주의 정치적 활용은 거꾸로 세대 범주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권 세력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20, 30대 유권자의 표이므로 이 연령층을

다른 연령층과 적극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연령 집단'은 오로지 통계적 구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정치 문화 영역에서 조작되려면 통계 언어가 아니라 정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치적 필요는 경제 영역에서 구성된 <그림 1>의 계열을 다음과 같이 확장합니다.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열악한 경제 상황 → 통계적 20, 30대 집단 → 청년
<그림 2>

이제 야권 세력은 20, 30대가 겪는 사회적 고통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이 가장 힘든 세대'라는 인식을 반복 생산합니다. 그리고 득표를 위해 '청년의 보호자'를 자칭합니다. 하지만 20, 30대의 삶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고통스럽다고 할 통계적, 경제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년을 정치 문화적 수준에서 제 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청년이 가장 힘든 세대니까...'라는 구절 다음에 온갖 문장을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청년을 배려하자', '청년에겐 멘토가 필요해', '청년은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청년은 우리당을 지지해야 한다', '청년은 우리 책을 사야 해', '청년은 우리 회사 신용카드를 써야 해', '청년은 원래 아픈 거야', '청년은 진보적이어야', '청년은 눈높이를 낮춰야', '청년은 어찌고저찌고'... 20, 30대를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특수 세대'로 취급하는 순간, 청년은 기호 소비의 무한 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셋째, '왜 다양한 경제 조건을 굳이 세대 집단으로 종합해야 하는가?' 우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청년 문제라고 부르는 일련의 이슈는 청년실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과 실업 중 더 중요한 말은 실업입니다. 즉, 청년실업은 청년 문제가 아니라 실업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는 노동과 고용 개념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문제의 하나로 취급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역시 세대가 아니라 노동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동, 고용, 계급, 빈곤 등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일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

로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특정 집단과 부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권력 작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노동 개념의 정의와 사용에 개입하는 권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이나 정부, 정치 집단의 권력일 수도 있고, 특정 지역, 성별, 직업이 가지는 기득권일 수도 있으며, 비슷한 역사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의 감정적 반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력관계 내에서 노동과 계급을 말할 수 있는 영역은 극도로 위축됩니다. 만일 사회적 논의 토대가 탄탄하게 존재한다면, 청년실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고용, 노동, 계급, 빈곤 등의 개념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년실업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정확히 맞는 개념은 세대가 아니라 고용과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듣고 조금 생소한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권력을 가진 집단이 고용과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청년이라는 말을 창조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한 가지 측면을 과장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장그래의 사례를 떠올려봅시다. 장그래와 마찬가지로 청년 역시 사회적 권력관계 내에 형성된 타협 지점입니다. 정확히 말해, 장그래, 열정 페이, 삼포세대 따위의 타협 지점 전체를 묶는 집합의 이름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특정 집단의 의식적 발명품이 아닙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20, 30대 집단의 목소리, 그에 동조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의 반응이 격렬히 부딪히다가 적절한 수준의 완충 지점으로 수렴한 결과물이 청년이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청년이 사회 갈등의 양상을 규정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획득하자,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의제가 그 기호 위에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주거 혹은 부동산 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청년 주거'라는 이름으로 제기됩니다. 청년을 위한 부채 정책, 생활 안정 정책, 문화 정책 등이 기존 정책 분류에서 튀어나와 별도의 분야로 독립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서로 다른 정책 이슈를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면 제도 수준에서 여러 가지 곤란함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청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거, 복지, 문화, 금융 따위의 기존 범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의 문제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이 해결해야 합니다. 주거권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있고, 국가 정책이 그런 합의 위에서 실행된다면 굳이 청년의 주거 문제를 따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권을 논의할 사회적 토대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 복지'라는 개념이 사회적 관심을 끌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주거에 청년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정치 문화 영역에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제 영역과 정치 문화 영역 사이의 충돌은 반복됩니다. 어쨌든 청년실업과 마찬가지로 '청년 주거 문제'도 청년이 아니라 주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 영역과 정치 문화 영역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해소가 아니라 '적절한 관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05. 청년의 법적 의미 : 청년은 사회적 약자인가?

그동안 청년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의 법적 지위'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 이름을 활용한 사람은 많았지만, 정착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청년 문제가 무엇이든, 법과 제도의 개입 없이 실질적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수준의 논의 없이 청년 문제를 말한다면, 청년을 단순한 정치적 기호로 소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구체적 대상을 겨냥해야 합니다. 세대는 그런 구체적 대상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연령 분류를 핵심 요소로 포함합니다. 민법, 청소년 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령대를 나눕니다.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의 법적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청년은 대통령령에 의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5조 1항에 명시된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도 같은 연령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청년의 범위를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특정 연령 집단의 '지위'입니다. 여기서 지위(status)란 일상용어가 아니라 시민권의 담지자인 한 개인의 법적 위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권리'를 이론적으로 다루며 설명하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 2/3를 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논의를 위해 당시 위헌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현재 2003. 7. 24. 2001헌바96 합헌 결정)나 여성할당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아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층은 독립된 개체로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나, 우리들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생의 한 단계이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도적으로 불평등한 취급을 받거나 차별을 받아온 고립되고 단절된 소수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고용주들이 더 선호하여 온 연령층이다.

요컨대 청년은 법적 관점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위헌 의견을 이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시민권'이라는 주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니, 핵심 쟁점을 몇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현대 공화주의 정치 체제에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 받습니다. 그렇지만 인종, 출신지, 젠더, 섹슈얼리티, 신체 특징, 종교 등에 의해 차별받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그들을 시민 지위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법률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시민권 운동의 첫째 목표는 그런 부당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차별이 사라진 뒤에도 현실의 차별은 계속됩니다. 여성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은 그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의도적인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도 '평등한 시민의 지위'(시민권)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의 차별은 여전합니다.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는 그런 차별을 완화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런 제도의

목표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특권 혹은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돌려줌으로써 권리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의 쟁점은 청년을 여성과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위헌 의견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청년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연령 특징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한 근거로 청년할당제가 합헌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아울러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청년할당제는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바, 피해 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청년할당제는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 때문에 새로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합헌 의견은 청년할당제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일 뿐, 15세 이상 34세 미만 연령층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의견을 수용한다고 해도, 청년고용할당제가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청년은 법적 수준에서 여성, 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 영역에서 청년은 특정 연령 구간에 속하는 인구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청년의 경제적 의미와 동일합니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특수성을 다루는 법률이 있는 것처럼, 법은 청년의 특수성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특수성은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과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입니다. 법은 수많은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그렇게 나누어진 각 집단을 특수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의 특수성과 차별 받는 집단의 특수성은 다른 종류에 속합니다. 구별되는 두 가지 종류의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의 특수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권리, 시민권, 차별, 평등이 일반적 언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런 언어의 부재가 청년과 차별받는 집단의 혼동을 불러옵니다. ('성 평등 관련 정책과 법률이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도 차별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청년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청년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차별받는 집단임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년이 얼마나 불쌍한지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청년 대상 정책을 일종의 '특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로 시작하는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 문화 영역에서 '청년'은 의미투쟁의 장입니다. 그 말이 현실의 문제를 지시하도록 끊임없이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런 정치 행위에 규범적 원칙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적지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과 차별받는 집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청년에 부여하려는 의미의 내적 논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06. '청년'을 둘러싼 의미투쟁 : 청년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가 이해하는 청년의 의미는 경제 상황이나 법률이 아니라 정치에서 비롯했다는 것입니다. 정치 영역의 범주 개념은 다른 영역의 개념과 전혀 다른 본성을 지닙니다. 경제 이론은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 사회 집단을 분류하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법은 구체적 적용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사회 집단을 범주화합니다. 반면, 정치 영역에서 범주 개념은 정치적 행위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념'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개념이란 '대상 인식'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집단을 인식하기 위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일은 특정 사회 집단에게 원하는 이름을 붙여,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면 그런 이름이 술하게 등장합니다. 국민, 시민, 진보, 보수, 노인, 여성, 장애인, 노동자 따위는 순수 이론적 개념이나 일상어로도 쓰일 수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발언 되는 순간 기존의 의미는 모두 득표를 위한 도구로 탈바꿈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였던 이름이 청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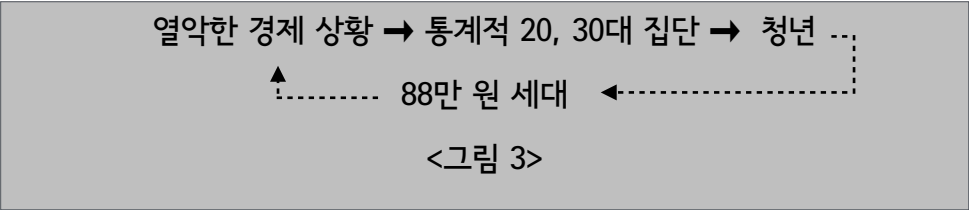
청년이라는 기호가 지니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은 2000년대 사회 상황뿐 아니라 그 기호의 내적 특성에서도 비롯합니다. 청년은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다른 개념에 비해 극히 유동적입니다. 예컨대, '여성'은 사회적으로 고정된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의미는 여성 차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동시에 차별 반대를 위한 싸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일베의 여성 혐오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여성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그런 기존의 이미지가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고정된 의미가 너무 강한 용어의 경우, 주류 권력이 아예 다른 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노동자 대신 '근로자', 이주민 대신 '다문화'같이. 사회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은

몇 가지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유동적으로 다양한 의미에 접합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고정된 의미의 힘이 강한 반면, 어떤 것은 유동적 경향이 큼니다. 두 번째 경우의 극단적인 사례가 청년입니다. 청년은 주어진 상황과 원하는 정치적 목표에 따라 마음껏 이질적 의미들을 결합할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것은 정당 정치와 선거, 사회 운동, 마케팅 전략 어디에나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계획을 '전략'이라 부른다면, 정치 영역에서 청년은 더 이상 범주 개념이 아니라 전략의 한가지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전략을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눠 봅시다.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가? 정치적 힘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책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책을 최대한 많이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를 움직여야 하며, 그 방법은 잠재적 구매자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이니 이 책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야권 세력이 택한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선거의 목표는 유권자의 표를 최대한 획득하는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 야권을 위해 투표할 핵심 집단을 20, 30대로 설정하고, 이들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청년이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도 '청년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흔히 '청년 문제'라 불리는 것의 해결이 정치적 목표일 겁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저임금·불안정 노동, 불안정한 주거, 비싼 등록금,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 물론 이런 활동 목표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활동의 성격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활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청년 활동가들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청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 움직이려는 대상은 누구인가 즉, 청년이라 호명되는 집단인가, 청년을 호명하는 집단인가? 체계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전략에 따라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기호는 청

년 활동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정되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불쌍하고 비루한' 이 미지의 말이 되어버렸고, '불쌍한 청년'의 이미지를 기성세대에게 반복 노출하며 그들의 동정과 연민을 호소하는 것이 청년 기호의 사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청년의 정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은 아래 내용을 공부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고할 사례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림 2>의 의미 계열은 2000년대 후반의 정치적 요구와 지적 작업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탄생하였습니다. 그 지적 작업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것이 『88만원 세대』의 흥행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정치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짱돌을 들어라"는 것이죠. 그들은 20, 30대 집단 전체를 "88만 원 세대"로 부르며 저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 2>의 '청년'이 지시하고 있는 '열악한 경제 상황'이라는 의미를 더 강화시켜 정치적 움직임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시도가 조선일보의 "달관세대"입니다. 달관이란 실재하는 경제 상황과 청년 기호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역시 경제 조건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달관세대와 비슷합니다. 다만 조선일보의 기획이 어쨌든 '열악한 경제 상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반면, 김난도는 그것을 성장 과정의 하나로 포함시켜 완전히 삭제해 버립니다. 그의 성공은 청년 담론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가 쓴 책의 전형적인 종교 내러티브에서 찾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 -----> 통계적 20, 30대 집단 → 청년 → 달관 세대

<그림 4>

중요한 점은 <그림 3>이 옳고 <그림 4>가 그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계열은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구성된 두 가지 전략일 뿐,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청년을 둘러싼 의미투쟁을 벌이며 서로 대립합니다. <그림 3>의 전략이 우세를 점한다면, 청년의 '올바른 정의'는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20, 30대 연령 집단이 될 것입니다. 반면, <그림 4>의 계열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면, '자족하는 삶'이나 '청춘의 아픔을 이겨내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따위가 청년의 따라야 하는 윤리적 규범처럼 간주될 것입니다. 청년의 고정된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투쟁의 양상에 따라 매번 다르게 정의됩니다. 인권 혹은 민주주의가 약자의 무기도, 강자의 통치 수단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미투쟁의 장에서는 이기는 쪽이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앞서고 있을까요? 이론의 여지 없이『아프니까 청춘이다』입니다. 『88만원세대』의 10배 이상 팔렸으니까요. 사회적 권력관계가 의미투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현실의 경제 조건을 삭제하려는 진영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달관 세대가 사는 법" 기획기사 발췌>

\ 2015년 2월 23일 (인터넷 기사 입력 기준)

[...] 저성장, 장기 불황 시대에 좌절해 스스로를 '88만원 세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고 자조하던 20·30대 가운데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나"는 젊은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차라리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법을 터득하자 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양극화, 취업 전쟁, 주택난 등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절망적 미래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말한다. 1990년 이후 20여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이 이미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로 불리며 사회현상이 됐다. 사토리는 우리말로 '득도·달관·초월'쯤에 해당되는 말이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서 우리에게도 분노와 좌절의 심리를 현실 안주로 치환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3/2015022300056.html)

\ 2015년 2월24일 (인터넷 기사 입력 기준)

[...] '달관(達觀)세대'는 노는 법이 다르다. 비정규직인 이들은 명품 옷, 좋은 레스토랑, 개봉 영화관 같은 '고비용' 소비엔 관심이 없다. 중저가 옷을 입고 햄버거와 떡볶이를 먹으며,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덕에 돈 없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한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4/2015022400161.html)

<‘사회적 소수자’에 관해>

‘청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 문제도 생각해봅시다. 과연 사회의 특정 집단을 범주로 나누어 개념화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가? 이것은 매우 고전적인,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난제 중 하나입니다. 사회 계급을 정치적 실천의 문제로 접근한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계급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빈곤 상태의 농민들을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1920년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나 농민은 모두 피지배계급이었지만, 이 두 집단은 결코 동질적인 집단으로 생각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사회 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했지만, 농민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저항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의존해서만 자신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을 ‘노동자’로 의식하면서 하나의 계급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농민 집단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정체성 자체를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람시가 이들을 불렀던 말이 바로 ‘하위(subaltern) 계급’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영문학자들이 이 개념을 차용하면서 우리에게도 ‘서발턴’은 어느 정도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서발턴’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흔히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집단들, 예컨대 여성, 농민, 어린이, 빈민,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등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분명히 정의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여성"을 단순히 신체적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 ‘여성이란 누구인가?’는 매우 난해한 질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범주 개념은 항상 내적 차이를 제거하고 동일성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여성을 모두 "여성"으로 부를 때는 매우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

니다. 북미 국가 출신의 원어민 교사와 동남아에서 온 공장 노동자를 동시에 떠올려보면, "이주민"이라는 개념 역시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집단들을 개념화하기 어렵다는 말은 단지 적당한 단어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고정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 자신도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소수자'라는 말 자체도 일반적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을 소수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의해 두 집단 모두 소수자로 불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동자 계급을 생각해 보면 매우 뜨거운 쟁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노동자'와 '계급'의 일상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노동자 계급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앞서 나열한 다른 소수자 집단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로부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노동자 계급과 사회적 소수자의 관계는 비단 지금 한국 사회뿐 아니라, 20세기 세계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이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수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이론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었던 사상가들의 몇 가지 설명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소수자와 다수자는 결코 숫자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항상 다수자들보다 많았습니다. 흔히 사회적 다수자와 소수자는 불평등한 경제 관계와 권력관계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와 종속'이라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편에 힘 있는 다수자 진영이 있고, 다른 한 편에 힘없는 소수자 진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수자란 하나의 진영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수자

에 의존해서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지배적인 다수자에게 저항할 때조차도 지배 집단의 언어를 빌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자는 지배 집단의 질서와 가치에서 배제되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질서와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 채 지배적인 것을 소수자의 방식으로 변형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항상 '침묵' 혹은 '남성적 언어'라는 양자택일이 강요됩니다. 즉 여성은 가만히 있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는 남성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성적인 것'이 보편적인 질서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여성은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주장마저 그런 보편적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IMF 이후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현상이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거 출현입니다. 계급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고정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소수자 집단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적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자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소수자 전체에게 유효한 완성된 전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소수자 집단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략을 모색할 때 피해야 할 위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소수자의 고정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려는 경향입니다. 예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연대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저항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외부의 강력한 압력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공통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집단이었다면 소수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집단의 연대와 저항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문화적 수준과 정당 정치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지금 한국 사회에서 흔히 목격되는 '대책 없는 훈계'입니다. 소수자의 처지를 소수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수자 자신도 다수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자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청년들이 80년대 대학생들처럼 "짱돌"을 들 수 있었다면, 20대 유권자들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해 집단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청년 문제"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자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7. 두 수준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도대체 청년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이것이 잘못 제기된 물음임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특정 집단이 있고, 청년은 그것을 지시하는 이름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오로지 정치 문화적 창조물입니다. 누군가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조건을 세대 범주로 종합하기 위해 청년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아무 의미나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껍데기처럼 활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란 무엇이여야 하는가?’, ‘그 이름으로 누구를 지칭할 것인가?’, ‘청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제 강의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반드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참여자 여러분의 기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 조건과 유리된 정치적 언어 게임에 맞서, 청년을 실재하는 인간의 고통을 향하도록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청년이라는 기호를 다루는 모든 작업은 정치 문화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의미투쟁입니다. 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법, 정책, 경제 영역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치 문화 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분리된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전략이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 영역에서 청년을 의미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면,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의 특수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경제 영역에서 청년의 특수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20, 30대 인구 집단을 의미하는 통계적 개념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경우, 세대는 중요한 분류 기준이지만 20, 30대 인구 집단이 다른 세대 집단보다 특별하게 다뤄져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청년 활동가가 ‘청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상상해봅시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시급한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그럼 청년실업, 불안정 저임금 노동, 주거

빈곤, 비싼 등록금 따위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활동가 자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청년 문제'가 아니라 노동, 고용, 주거, 교육의 문제라는 것을. 이런 충돌을 피하려고 정치 문화 수준의 전략에만 집중하면 결국 현실의 문제 해결 없이 '청년의 고통을 덜어줄 문화적 진통제'만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수준에서 청년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정치 수준에서도 청년이란 기호를 포기해야 합니다. 정치적 기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사 그것이 인위적으로 발명되었다 해도 실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처럼 꾸며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세대 특수성을 강조할수록 두 수준 사이의 충돌은 물론, '청년만 특별 대우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사회적 반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면 여기저기서 '너만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는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타인의 침묵이 자기 고통의 보상이라도 되듯이 말입니다. 청년이 국가와 기성세대의 혼계에 직면한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토대도 없이, 약자의 호소는 "떼쓰기"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청년유니온이 외쳤던 "아프다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답이었지만, '나는 아프다'는 외침은 여전히 '연약한 청년들의 투정' 따위로 간주됩니다. 그동안 이런 공격에 맞선 유일한 대응 방법은 청년이 얼마나 불쌍한지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불쌍해 보이려 노력하는 청년과 혼계를 늘어놓는 주류 집단 사이의 악순환이 한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구체적 경제 상황과 정치적 기호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의 본질적 특징에서 비롯됩니다. 청년의 세대 특수성을 경제 수준에서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청년을 향한 사회적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듭니다. 청년을 정치 전략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그런 충돌을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더 불쌍한 세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면, 충돌의 적절

한 관리도 불가능할뿐더러 청년이란 기호의 유효기간도 곧 끝날 것입니다. 결국, 정치 전략의 관점에서 청년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논의 토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토대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평등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경제 조건과 정치 기호 사이의 충돌을 관리하며 청년을 재정의할 수 있는 토대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

시민성과 권리

01. 사회적 논의의 이상적 절차
02. 세대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 권리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03. 권리란 무엇인가?
04.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 시민의 평등한 권리
05. 사회권의 재인식: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주장으로
06. 시민권과 사회적 소수자
07. 청년의 지위 : 청년 시민
08. 두 가지 전략의 충돌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앞에서 청년의 의미를 다층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청년 담론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과 경제 영역에서 청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기호의 강력한 영향력은 정치 문화적 의미에서 비롯합니다. 청년은 20, 30대 연령층이 겪고 있는 노동, 주거,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전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규정하는 법, 경제적 개념과 청년의 정치 문화적 의미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제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과제입니다. 경제 영역과 정치 문화 영역의 구별은 '내부 목표'와 '외부 전략'이라는 구분에 대응합니다. 즉, 청년 활동가 집단의 내부 목표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런 목표를 집단 외부와 합의하기 위해 청년이라는 정치적 기호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제 영역과 정치 문화 영역 사이의 충돌이란, 청년 활동가 집단의 내부 목표와 외부 이미지 전략 사이의 충돌입니다. 2장의 주제는 '내부 목표'에 관련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 전략을 말하기 전에 청년 활동가 집단의 내부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이상적 논의 모델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한국 사회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정치적 행위자 집단 내부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 수준과 정치 문화적 수준 사이의 충돌, 내부 목표와 외부 전략 사이의 충돌이 청년 활동가 자신의 정체성마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2장에서 이상적 논의 모델의 토대로 제안하려는 것이 '시민의 평등한 권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의 결론을 먼저 밝힌 후에 그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01. 사회적 논의의 이상적 절차

갈등은 사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갈등 없는 사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문제는 '갈등하는 사회 집단 사이의 논의와 경쟁이 어떤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가?'입니다. 권리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는 대화의 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회적 논의의 이상적 모델은 무엇일까요? 일단 세 가지 절차로 요약하겠습니다.

1. 모든 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2.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평등한 권리의 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한다.
3.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응하는 차별적인 사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평등한 권리를 위한 불평등한 분배'로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절차를 세대 갈등에 적용해봅시다.

1. 20, 30대 실업자와 70, 80대 빈곤층은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지닌다.
2. 20, 30대 시민의 실업과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70, 80대 시민의 빈곤은 전혀 다른 사회·경제 조건을 구성한다.
3. 국가는 20, 30대 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과 70, 80대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각각 시행해야 한다.
4. 이 두 가지 정책의 형태와 투입 예산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 물론 사회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당연히 발생하지만, 시민의 평등한 권리라는 토대 위에서 분배의 '공정'한 기준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런 논의 절차의 정확한 사례를 보여준 것은 2014년,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언론 대부분과 여론은 '소방관들이 고생하니까 처우 개선을 해주자' 정도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지닌 함축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것입니다.

1.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안전 불평등이 발생한다.
3. 안전 불평등의 해결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소방 안전을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려면, 도시보다 더 큰 비용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농촌 거주자를 위해 더 많은 소방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군가는 국가 재정의 부족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다면, 그로부터 자원의 공정한 분배 방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상적 논의 모델의 실현은 권리, 시민, 시민권,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 개념들은 사회적 언어로 자리 잡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논의 토대 형성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먼저 '권리'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비판하며 그 본래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2. 세대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 권리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반적 반응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단식을 시작한 김영오 씨의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그가 좋은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유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단식했다고 해도, 그의 행위는 적법한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단 한 번도 배상금 문제를 먼저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주장한 것은 항상 진실 규명과 실종자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 가족이 배상금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지배적 의식은 '권리'를 특혜, 특권, 특별 대우 혹은 이기적 요구 따위와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단식이라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권 행사도 사회적 동의를 얻으려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실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김영오 씨는 자신이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권리 주장에 대한 이러한 압력의 배경에는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일반도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함께 눈물 흘렸던 사람들조차, 피해자 가족이 단지 '피해자'로서 가만히 있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회적 억압은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공통으로 행사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자 자신도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청년실업 해결을 권리로써 요구하지 않습니

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편의점 알바생은 단순히 나이 어린 약자로 인식될 뿐,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때도 청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호소할 뿐, 계약 당사자로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서 국가에 주거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습니다. 요컨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시민도 자기 권리의 정당성을 모릅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지 호소하며 사회적 관심을 부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회 집단이 '내가 남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자영업자와 서비스 노동자의 갈등이 전개되는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물론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도 있습니다. 예컨대, 공적 연금은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문에서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은 한 묶음으로 취급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청년'이라는 기호를 공격 무기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영업자와 20대 서비스 노동자의 갈등은 세대 갈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입니다. 그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권리 주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내가 더 힘들다'고 외치는 것 외에 갈등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매번 증명해야만 국가와 기성세대의 '동정과 시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청년에게 시혜를 베푸는 대신 '고통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앞 장에서 말했듯, 불쌍해 보이려 노력하는 청년과 훈계를 늘어놓는 주류 집단 사이의 악순환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타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서로 무엇을 적절한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03. 권리란 무엇인가?

개념어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권리' 역시 유럽어의 번역입니다. 여기서는 영어 'right'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개념과 마찬가지로 right 역시 수천 년에 이르는 고유한 역사를 가집니다. 여기서 그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개념 변화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에 이르는 시대에는 right를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올바른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영어 right에는 아직도 '옳은', '적절한', '바른', '곧은' 등의 의미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기를 거치며 right의 의미는 '개인의 주관적 속성'으로 변화합니다. 즉, 권리의 계몽주의적 개념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 개념의 원초적 형태를 그리스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right를 개인의 주관적 속성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계몽주의 이후 성립했다는 학설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권리 개념의 기본 내용은 네덜란드의 법학자 휘호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쓴 『전쟁과 평화의 법에 대해』(De Iure Belli ac Pacis, 162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자질로서, 무엇을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대표적인 계몽주의 정치 사상가들(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칸트)의 권리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방금 설명은 권리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정당성'은 권리 개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즉, '권리란 무엇인가?'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은 모든 시민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의 대답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왜 정당한가?'는 물음의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혐오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혐오할 권리가 무엇

인지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정당성 근거도 달라집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과 인간의 기본권은 어떻게 정당화될까요? 몇 가지 이론적 설명이 존재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생각은 '지위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예컨대, 나는 '인간'이라는 지위로부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시민'이라는 지위로부터 언론의 자유나 투표권을 보장받습니다. '인간'과 '시민'은 개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기본 지위를 구성합니다. 이로부터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들을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형식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논의 주제를 시민권의 범위로 한정하겠습니다.

권리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별로 새로운 것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 오해를 살펴보면 권리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권리와 '권리의 상관물'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유권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나는 내 컴퓨터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컴퓨터라는 '대상'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다릅니다. 만일 누군가 내 컴퓨터를 훔쳐가서 내 수중에 없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속합니다. 소유권은 개인의 속성이며, 소유의 대상은 객관적 사물입니다. 행위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권리의 행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밝힙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만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을 체포했다고 합시다. 흔히 이것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이해하는데, 이 역시 권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찰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든, 체포당한 그 사람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경찰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의 '행사'입니다. 만일 경찰에 의해 신체의 자유 자체가 박탈되었다면, 경찰의 행위를 불법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경찰의 행위는 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 자체를 제거한 것일 테니까요.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신체의 자유는 경찰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두 번째 오해는 권리를 의무의 보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의무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업무 수행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나 시민이라는 지위에 결부된 본질적 권리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박탈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납세의 의무 혹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나 노동 삼권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마치 '의무를 다했을 때에 주어질 수 있는 특혜'로 이해하는 것은 권리 주장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믿음입니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대응관계>

물론 권리와 의무 사이에 성립하는 일반적 대응관계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거짓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지만요. 미국의 법학자 호펠드(Wesley Newcomb Hohfeld)는 법적 권리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권리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구별하는데, 그중 하나가 요구권(claim-right)입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A가 B에게 X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말은, 'B가 A에게 X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A의 권리와 B의 의무가 대응됩니다. 이런 분석은 조금 후에 설명할 사회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권리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오해에서 개인의 권리 주장을 특혜나 특권 요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권리란 '어떤 행위를 허용하는 조건'으로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리의 상관물이 되는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서만 양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와 권리의 상관물을 혼동하다 보니, 권리의 정당성이란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권리 주장을 더 많은 재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권리 요구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치를 동원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람은 권리와 전혀 상관없는 충실한 의무 이행을 증명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딱한 처지에 있는지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의에서 설득과 토론은 사라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감'만 남게 됩니다.

앞서 말한 세월호 참사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권리에는 국가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할 권리'와 '배상 혹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피해자의 권리가 그들이 진상 규명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권리들의 윤리적 정당성은 널리 인정됩니다. 물론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피해자의 권리는 법적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그 권리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지라도,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주장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가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어떤 조건도 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4.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 시민의 평등한 권리

시민(citizen)의 어원은 '도시에 사는 주민'이며,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 의미가 일 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서울시민', '부산시민'은 많이 써도, '한국 시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은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정치·사회적 개념으로 재정의 되었습니다. 80년대 사회 운동의 기초가 민중, 계급, 민족 등이었다 면, 90년대 시민운동은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중간층에 두고 '교양있는 중간층'을 '시민운동'의 주체로 삼았습니다. 요컨대, 한국에서 시민이란 '도시에 사는 주민' 혹은 '문화적 교양을 갖춘 중간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들은 '시민'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시민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누가 시민일까요?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문화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민이 아닐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시민성'(citizenship, 시민권)입니다. 시민성이란 '시민을 시민이게끔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대 공화주의 정치 체제는 시민성에 기초해 법적, 경제적, 정치적 주체인 시민을 정의합니다. 그럼 시민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성도 이천 년 넘는 역사를 가진 개념입니다. 시민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입문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중 리처드 벨라미(Richard Bellamy)라는 영국 정치학자가 쓴 소책자 『시민성』(Citizen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과 프랑스 사회학자 도미니크 슈나페르(Dominique Schnapper)가 쓴 『시민성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citoyenneté?)의 설명을 참고하겠습니다.

벨라미는 시민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구별합니다. 첫째, 멤버십입니다. 시민이란 한 정치 공동체의 멤버입니다. 아테네 시민이란 아테네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시민성은 사회적 관계의 원천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공동체의 멤버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대 국가 대다수에서 그 기준은 '국적(nationality)'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이주가 세계적 현

상이 된 지금, 국적과 공동체 멤버십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입니다. 한 사람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라는 행위에 의해 시민은 '정치적 주체'로 규정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참여를 시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일에만 관심을 쏟고, 폴리스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시민의 덕목을 결여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이 토지와 가정을 가진 남성만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주민, 노예, 여성, 어린이를 배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폴리스의 일을 제 일처럼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참여를 시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위험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생각은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시민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권리입니다. 시민은 '권리의 담지자로 정의된 개인' 즉, 법적 주체입니다. 누군가를 시민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벨라미는 시민성의 일차 정의를 '권리들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he rights)로 제안합니다. 슈나페르 역시 시민성의 일차 요소를 권리에서 발견합니다. 공동체의 멤버로 인정받았느냐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았느냐에 의해 결정되고, 시민의 참여 역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권리에 집중하는 이유 역시, 권리가 시민성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사회적 지위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시민권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시민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의 내용도 사회 구성원들의 실제 생활 속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시민권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 정치 체제의 근본적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쉬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현대사에서 헌법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군사 독재는 초헌법적인

정치 체제였고 개인의 권리를 생각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그다음, '국민' 개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 '시민성에 의해 규정된 시민'이라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 이유는 '국민'이 '시민'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혁명의 결과물인 프랑스와 미국 헌법에는 인간(men), 인민(people), 시민(citizen)이 미묘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셋 중 어느 것도 국민 개념과 교환될 수 없습니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이런 개념들은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모두 '국가의 백성' 즉, 국민으로 번역됩니다. 권리에 대한 오해와 권리 주장에 대한 거부감의 배경에는 국민 개념이 있습니다. '국민'은 시민 혹은 인간이라는 개인의 지위에 귀속된 권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리란 국가 장치에 의해 보장되지만, 권리의 담지자인 개인은 국가 이전에 존재합니다. 국민 개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5. 사회권의 재인식: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주장으로

1부에서 언급한 '청년들은 더 불쌍한 세대'라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동정' 혹은 '시혜'와 결합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니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자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부탁'이기 때문에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은 들어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청년들의 부탁-국가의 시혜'라는 형식 속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기성세대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 문제"의 해결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기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온 것들을 '권리 주장'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비인간적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분석해보면 과거의 권리 주장은 핵심 내용이 빠진 구호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할 물음은 '사회운동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 권리라는 말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민이며,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시민이라는 지위의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노동자라는 지위에서 보면, 편의점 소유주라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임금을 빼앗긴 것입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 역시 시민과 노동자라는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지위를 먼저 고려하느냐에 따라 그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은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무엇보다 권리 주장의 대상이 국가와 자본으로 구별됩니다. 권리란 지위에 결부된 것이며, 어떤 지위에 기초할 것이냐에 따라 권리 주장을 위한 운동의 전체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러한 쟁점은 특별

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인권 개념입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며, 시민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는 빈번히 "신체의 자유 침해"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혹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라는 다소 모호한 의미로 이해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인권 침해"만큼 신비로운 말도 또 없습니다. 사회운동에서 인권 개념이 사용될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권리 주장'이란 이처럼 선언적 구호로 제기된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으로 정의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활동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권리의 언어로 바꾸어 제기한다면, 대부분 '사회권'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권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영국의 사회학자 마샬(T. H. Marshall)이 쓴 『시민권과 사회 계급』(1949)에서 제시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주로 법학계에서 사회권을 논의해 왔는데, 이들은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1966)을 논의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앞서 제안한 사회적 논의의 이상적 절차는 마샬의 이론과 사회권 규약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1. 모든 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2.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평등한 권리의 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한다.
3.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응하는 차별적인 사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평등한 권리를 위한 불평등한 분배'로 정의된다.

사회권은 한마디로 말해 3번에서 말한 사회정책의 시행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입니다. 즉, 국가는 평등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의무를 지니고, 시민을 그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권 역시 시민권의 구성 부분이지만, 다른 권리들과 구별되는 점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전제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권리, 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등은 국가의 의무에 대응합니

다. 사회권의 관점에서 지금의 쟁점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을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여전히 시혜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최저 임금 인상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노동을 통해 얻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있냐 없냐는 이러한 기본권 보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은 그런 의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회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이 법에 규정된다고 해서 실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90년에 이미 UN 사회권 규약을 동의했습니다. 주거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한 <주거복지기본법>도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이러한 법률의 현실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미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조차 너무나 간단히 무시되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약한 정당 정치, 시민 회의 부재, 작동하지 않는 지식 생산 시스템 등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죽은 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권을 기초로 권리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법 운동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시민과 인간의 지위는 무엇인가?', '왜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등의 물음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는 과제이므로, 당장 시급한 일은 사회 운동 내부에서라도 이런 주제를 논의하고 자기 내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주체가 풍부한 이론과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06. 시민권과 사회적 소수자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평등'입니다. 시민의 지위를 획득한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대 시민 혁명의 기본 사상이었지만, 실제 역사에서 시민권의 형식적 평등이나 실현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와중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첫 번째 조항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나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밝혔지만, 그러한 "인간"에 여성, 비유럽인, 성소수자 등이 포함된 것은 20세기 이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투표권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보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권리의 평등이 인정되었고 해도, 그것의 실질적인 보장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샬은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회권을 이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지만, 시장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계급 불평등이 그러한 시민권의 평등한 실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샬은 국가가 시민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계급 불평등이 권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와 평등한 시민권이 양립할 방법을 사회권의 보장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평등한 시민권의 실현은 다양한 사회운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시민권 사상은 화해 불가능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역사에서 노동계급 운동과 시민권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습니다. 평등한 시민권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다른 영역은 사회적 소수자의 운동이었습니다. '소수자(minority group)'는 노동조합처럼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결집하기 어려운 집단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인류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발명품입니다. 권력을 지니지 못한 약자들이 지배 집단에 맞서 하나의 역량을 구성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신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내었다고 한 마르크스의 말은 결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

회적 소수자 집단 대부분은 조직적 힘없이 사회를 변화시켜야만 했고, 그러한 운동의 첫 번째 목적은 평등한 시민권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반인종주의 운동,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의 공통된 구호는 '차별 반대'였습니다. 물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치, 문화, 지식, 경제, 심리, 법 등 모든 분야에서 철폐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소수자'라는 말은 매우 좁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흔히 사회 운동 영역에서 소수자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 소수자 정도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노동자 모두를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극빈층들도 모두 소수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년이라는 말로 떠올리는, 고통스러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 20, 30대 연령 집단도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1%와 99%의 사회"라는 표현에서,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수자들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양극화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소수자로 해체해버립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소수자에게는 서로를 묶어줄 정치 문화적 매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청년'이라는 기호가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소수자들이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소수자 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입니다. 다만 젠더나 인종에 의해 차별받았던 소수자 집단과 달리, 불안한 노동조건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권의 보장입니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07. 청년의 지위 : 청년 시민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청년의 권리' 같은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담고 있는 이중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청년의 권리가 아닙니다. 앞서 권리란 지위에 부여된 속성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청년들은 국가를 향해 청년실업의 해결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청년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지위에 부여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등한 시민권을 요구했던 여성 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요구했던 사람들도 빈곤층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자 운동이 주장한 것은 모두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에게 특수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젠더, 신체적 조건, 소득 수준, 학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특별법>이나 다양한 형태의 여성할당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혹은 여성의 권리를 특수하게 보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제도는 '특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경제적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권의 기본 원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청년 활동가에게 미묘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이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구 집단 전체를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청년할당제>에 대한 위헌 의견이 청년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도적으로 불평등한 취급을 받거나 차별을 받은 아온 고립되고 단절된 소수집단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떠올려봅시다. 이것은 무엇보다 '청년'이 정치 문화적으로 구성된 인위적 기호라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청

년 세대'는 법이 다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노동시장 진입 실패, 불안정 고용, 비인간적 노동 조건,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한 주거 조건, 높은 등록금 등의 구체적 경제 상황에 따라 20, 30대 인구 집단을 재분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대상의 구체성이 제거되어 버립니다. 요컨대, 1장의 <그림 1>에서 표현한 경제적, 통계적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작성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상 분석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청년 일자리, 노동정책의 대상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세분화합니다. '묻지 마 취업 집단(경쟁 배제 집단)', '불안정 저임금 청년 근로 빈곤층', '비진학 고졸 구직자', '비구직 NEET (구직단념자)'. 단순한 연령 기준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실업, 노동 조건에 따라 정책 대상 집단을 분류한 것입니다. 동시에 '청년'이라는 기호로 지시하던 사회적 약자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였습니다. 청년 활동가가 자신의 요구를 권리 언어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방식의 세대 재분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분된 집단이 어떤 조건에 의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지 분석할 때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 두 가지 전략의 충돌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봅시다. 1)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를 향해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권리 주장은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권적 요구가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3)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20, 30대 연령 집단을 다양한 경제적 조건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시행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의 효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기호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분석했다시피 세대는 사람들이 사회를 인식하는 가장 강력한 형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청년을 둘러싼 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청년'을 둘러싼 정치 문화적 의미투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1장에서 설명했듯이 경제적, 법적 수준의 전략과 정치 문화적 수준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돌을 다룰 새로운 논의 지평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앞서 인용한 청년허브 보고서에서 분류한 청년 일자리, 노동정책의 네 가지 대상 집단을 생각해봅시다.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사회적 원칙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정책은 여전히 동정심에 기초한 '시혜적 복지'라는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권적 원칙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단지 청년 세대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 주장을 바탕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대학에서 일하는 50대 청소 노동자에게도 미

칠 수 있습니다. 20대 세입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주거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로 제기한다면, 세대 간 경쟁은 사라지고 쪽방에서 살아가는 극빈층 노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청년 운동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들을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는 순간, 청년 세대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의 보편적 기준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 권리에 기초한다면 정책의 설계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의 보고서는 청년 주거정책의 목표로 '4인 가구 중심 주거 정책'을 청년 세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리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기존의 주거 정책은 4인으로 구성된 '정상 가족'을 표준으로 삼아 '비정상' 가족 형태를 차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제안은 청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제안을 기초로 수립된 정책은 단지 청년 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평등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청년 일자리, 노동정책은 국가의 고용, 노동 정책과 별도로 수립될 수 없으며, 청년 주거 문제도 국가의 부동산, 주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청년정책은 국가 정책 전체 속에 위치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청년정책이 평등한 권리 보장에 기초하고 있다면, 주거 정책의 사례처럼 그 권리를 국가 정책 전체의 원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힘들다'를 외치며 다른 이들의 고통에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향해, 청년 활동가들은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모두의 고통을 더불어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 법적, 정책적 수준에서 청년 세대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 시민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과 다르지 않게 되면, 청년의 정치 문화적 의미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서술한 『88만원세대』의 기획은 결국 '청년은 더 불쌍한 세대'라는 인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운동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들을 주장함으로써, '내가 아프다'는 외침을 '모두가 아프다'란 외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경제적 고통은 실상

사회적 소수자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문화적 수준에서 청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단지 20, 30대 인구 집 단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소수자 전체의 문제를 환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획이 성공한다고 해도, 앞서 말한 두 가지 전략의 충돌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청년이라는 기호의 효과를 강화해야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청년 범주를 경제적 조건들로 세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청년 운동이 보편적 권리 주장을 바탕으로 세대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난다면, 청년의 세대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고도 청년이라는 기호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 운동은 '청년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청년들이 전체 시민을 위해 펼쳐나가는 운동'으로 재정의 될 것입니다.

3

청년정책의 재구성

01. 청년정책은 이차 범주
02. 일차 범주와 이차 범주 사이의 충돌
03. 충돌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 : '청년'을 넘어선 청년정책

이제 청년 활동가는 물론 행정 조직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현실적 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청년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시민권을 사회 갈등 관리의 토대로 삼는다면, 청년정책은 어떻게 기획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룬 '청년' 기호와 권리 개념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기획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의 전체의 목표는 결국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완결된 정책 구상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책 연구자와 기획자들의 몫입니다. 제가 집중하려는 내용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위의 내용을 전제로 삼아 청년 정책 수립의 원칙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01. 청년정책은 이차 범주

1장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봅시다. 법적, 제도적 수준에서 '청년'은 특정 연령대의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통계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대체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미만 인구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15세 이상 34세 미만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라는 개념은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청년'과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연령대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먼저 법적 수준에서 보면, 다양한 법률 체계를 관통하는 보편적 세대 구분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청소년 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성폭력 처벌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령대를 나눕니다. 전체 정책을 특정한 연령 범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정당성이 법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적 근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미만 인구 집단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매우 희박합니다. 정책 설계와 시행이라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분류하는 것과 고용·일자리 정책으로 다루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적합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청년실업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최저 임금, 노동시장 등의 주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청년실업을 주거 안정화 대책, 빈곤 문제, 청년 문화 공동체 지원 등과 같은 범주에 분류한다면 매우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극히 복잡한 행정 조직 체계와 그에 소속된 인력, 물리적 경제적 자원, 법적 기술적 정치적 이론들의 구조화된 집합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 내에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개념과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책 기획과 시행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정책의 내적 논리에 따라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거 정책	최저 임금	일자리, 노동정책	교육 정책	사회 보장	문화 정책	...
4인 가구, 하우스 푸어...	여성 청소 노동자, 여성 서비스 직 노동자...	정규직, 계약직...	돌봄 교실, 유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4대 보험 수혜자, 노인 연금...	문화컨텐츠 제작 지원, 예술인 지원...	...
이동은 잦은 1인 주거 세입자	서비스직 종사 알바생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 서비스직 종사 비정규직	대학교육, 대학 등록금	사회 보장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	청년 문화 공동체 지원	청년정책
쪽방촌 노인, 빈곤층 세입자	노인 경비 노동자...	노인 일자리...	대입정책, 평생교육...	기초생활보장...	지역 주민 문화 프로그램...	...

여기서 주거, 노동, 문화, 교육 등을 '일차 범주'라 부르겠습니다. 각 정책에는 고유한 정책 대상자들이 대응되며, 그 정책 대상자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나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정책은 직종, 고용형태, 지역, 성별 등으로 대상자를 나누어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자'란, 노동정책 대상자 중 '문지마 취업 집단', '불안정 저임금 청년 근로 빈곤층', '비진학 고졸 구직자', '비구직 NEET'에 해당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이 분류는 최근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작성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상 분석 연구』를 참고한 것입니다.) 주거정책은 가족 형태에 따라 정책 대상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불안정 1인 주거 세입자들이 흔히 말하는 '청년 주거문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요컨대 청년정책이란 일차 범주에 포함된 각종 정책 중에서 대략 20,

30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따로 추려내기 위한 '이차적 분류 개념'입니다. 그럼 왜 굳이 여러 정책 영역을 가로지르는 이차 범주를 창안해낸 것일까요? 이것은 1장에서 제기했던 것과 동일한 물음입니다. 그 답도 같습니다. 정책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 대상자를 세대별로 구별하면 될 일이지 정책 자체를 세대별로 분리해 설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정책을 구성하는 제도나 법률의 내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02. 일차 범주와 이차 범주 사이의 충돌

1장에서 "청년"의 경제적, 법적 의미와 정치 문화적 의미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일차적 정책 범주와 이차적 정책 범주 사이의 충돌 혹은 경쟁이라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기본조례안에 규정된 청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마. 청년의 부채 경감
- 바. 청년의 생활안정
-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 아. 청년의 권리보호
-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여기에 나열된 모든 내용이 사회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금융정책, 문화정책 등과 중복됩니다. 이러한 일차 범주와 청년정책이라는 이차 범주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일자리 고용 정책과 청년정책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 논리적 충돌이 아닙니다. 청년정책이 독자적 범주로 제도화되면 그것을 담당할 행정 조직과 논의 기구가 신설됩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이 다루는 실업문제는 기존 고용·일자리 관련 조직의 업무와 중복됩니다. 제도의 내적 논리에 따르면 실업 문제는 고용·일자리 정책으로 분류되고 해당 부서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를 앞에 두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쟁해야만 하는 역설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차 범주와 이차 범주 사이의 논리적 충돌은 필연적으로 행정 조직 사이의 실제적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서 청년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청년정책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할까요? 오히려 청년정책이라는 분류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책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무시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그것의 시행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의 내적 논리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는 정치적 힘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아무리 강력한 정치 세력이라도 청년정책을 일차 범주로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법과 제도의 내적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은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법과 제도의 설계와 시행은 정치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청년실업은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갖 제도를 시행하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담당 조직이 있고 예산이 배정되는 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정치적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힘을 가진 정당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청년노동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도 없고 그나마 존재하는 시민운동은 매우 허약합니다. 백지와 같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치적 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 '청년'이라는 기호의 힘입니다. 이미 '청년'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세대 담론이 가진 정치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별도의 조직과 정책 범주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청년정책을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03. 충돌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 : '청년'을 넘어선 청년정책

1, 2장에서 청년의 두 가지 의미가 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권이 어떻게 그 충돌을 다룰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정책에서 발생하는 일차 범주와 이차 범주 사이의 충돌과 해소 방법도 비슷한 논리 구조에 따라 제시됩니다.

충돌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일차 범주와 이차 범주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정책 분야에서 다루지 않는 '틈새'를 공략해 청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조직이 예산을 확보해 다른 행정 조직에서 수행하지 않는 독자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관련자 모두가 행복할 방법입니다.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당사자들만 빼고 말입니다. 정책 결정권자는 청년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티 낼 수 있으니 좋고, 담당 공무원은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청년 활동가는 청년정책으로 확보된 예산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실업의 해결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선택한 길입니다. 성폭력은 한국 사회의 가장 오래된, 그렇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당연히 여성정책의 과제지만,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 역시 이차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다른 영역의 정책과 조직에 개입하는 대신, '여성'에 '가족'을 결합하며 독립된 혹은 고립된 자기만의 영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태조사'와 '성폭력 방지 교육'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청년정책과 일차 정책들의 중복 영역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정책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입니다. 다시 청년실업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청년실업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고 불렀던 일련의 경제 정책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 안전망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노동 및 경제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성공 없이 청년정책의 성공도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청년실업 정책의 추진은 일자리·노동 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정책이 '시민의 평등한 권리'라는 원칙에 기초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일 청년정책이 청년을 다른 세대 집단과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로 취급한다면, 설사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효과는 청년 집단에만 한정되면서 분배 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실업 정책이 '시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며 다양한 대상을 겨냥한 정책 중 하나로 실행된다면, 일차 범주에 해당하는 정책 영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의 권리에 기초한 보편 정책의 하나로 정의된 청년정책은 '청년을 넘어선 시민의 정책'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가 정책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한 서울시로 논의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정책 수립의 원칙을 정하는 것과 구체적인 정책을 실제로 기획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일들입니다. 서울시만 보아도 이미 수 많은 상수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는 손댈 수 없는 외부 조건입니다. 서울시 정책 정책 내부 역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예산과 조직, 온갖 정치적 관계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책 기획이란 몇 안되는 선택지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을 찾아 헤메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앞서 제안한 원칙을 이러한 선택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김난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쌤앤파커스.

토마스 험프리 마셜, 2014, 「시민권」, 나눔의집.

서울시 청년허브, 2015,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상 분석 연구」.

Bellamy, R., 2008, *Citizenship :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Schnapper, D., 2001, *Qu'est-ce que la citoyenneté?*, Gallimard.

Laclau, E. and Mouffe, C.,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Verso.

Laclau, E., 2005, *On Populist Reason*, Verso.

Edmundson, W. A., 2012, *An introduction to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euze, G. and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Les Editions de Minuit.

부록

01. 프랑스 청년 보장 정책

청년보장(La garantie jeune)

* 출처 : <http://www.gouvernement.fr/action/la-garantie-jeunes>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업 청년들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청년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보장이란 '상호교환(donnant-donnant)' 원리에 따라 구직 상태에 있거나 직업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18-26세 청년들에게 현금수당(allocation)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말까지 50,000명의 청년이 청년보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보장이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업 청년들을 위한 '신뢰의 조치(Un geste de confiance)'입니다.

청년 : 담당 상담사와 함께 구직과 직업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약속(engagement)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1년간 청년 보장에 들어갈 청년을 선택합니다.

국가 : 그의 파트너들과 함께, 실업 청년이 고용 기회를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정부 : 2012년과 비교해 2017년의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청년 빈곤과 싸우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EU : 유럽 청년 보장을 약속합니다.

청년보장의 구성 요소

1. 지역별로 청년 개인과 집단을 지원하는 것.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직업 경험과 교육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2. 월 452유로를 지원합니다.

02. 프랑스의 계약(contrat) 개념.

유럽의 사회 정책을 소개하는 한국 보고서들을 보면, 제도의 기술적 분석에 머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국의 비슷한 제도에 대응시켜 일종의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제도의 내적 체계입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계약(contrat) 개념이 어떻게 고용 형태와 노동 서비스에서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노동에 관련한 모든 이슈는 '노동의 권리(droit de travail)'라는 최상위 범주에 묶입니다. 그 아래 실업, 휴가, 해고, 계약과 같은 하부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계약'(contrat)입니다. 계약은 다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괄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규정된 기간의 계약", "규정된 기간의 계약", "특정한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의 계약", "수습 계약", "장애인을 위한 수습 계약", "규정되지 않은 기간의 노동 계약", "시간제 노동 계약", "불규칙한 노동 계약", "사회생활 진입을 위한 계약", "비상업 영역에 진입하기 위한 계약", "상업 조직에 진입하기 위한 계약".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항목이 '노동의 권리'라는 법률 범주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인턴이라고 부르는 고용 형태는 물론 구직 수당과 직업 교육 등도 모두 '계약'으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이 모든 것은 개인과 국가, 혹은 개인, 국가, 기업, 비영리 민간조직 사이의 계약 관계로 존재합니다. 계약 당사자에 따라 계약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청년고용정책, 노인고용정책 등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 안에 시니어를 위한 규정된 기간의 계약, 사회생활 진입을 위한 계약 등으로 배치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구별이 단지 제도적 구별이 아니라 사회 운동의 범주로도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규칙한 노동 계약(Le contrat de

travail intermittent)'은 주로 배우나 예술가들에게 해당하는 계약 형태인데, 얼마 전에 이 계약을 맺고 있는 예술가들이 파업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담론’ 분석에 기초한 청년 활동 전망 연구

발행인_ 서민정

발행일_ 2015년 8월 30일

발행처_ 서울시 청년허브
